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28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이인선·강대식·이만희

백종헌 • 김석기 • 정희용

김상훈・주호영・구자근

권영세 • 우재준 • 김승수

유영하 · 김기웅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한국과학기술원법」과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 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 학교"라 함)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아니함.

이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1항 중 "대경과기원"을 "대경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외의 부분 전단 중 "제12조의7제1항에"를 "제12조의7제1항 전단에"로한다.

제12조의7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관으로 정한다"를 "정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로한다.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의11부터 제1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

-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 본다.
-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휘·감독한다.
-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 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 있다.
 -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 ④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후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 제12조의14(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육 관련 연구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u>대경</u>	제12조의6(교원의 임면) ① <u>대경</u>
<u>과기원</u> 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	과기원(제12조의11에 따른 과
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	학영재학교를 포함한다)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총장은 <u>제12조의7제1항에</u>	⑤ <u>제12</u> 조의7제1항 전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단에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	
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	
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	
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	
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	
여야 한다.	
⑥ <u>제12조의7제1항에</u> 따른 교	⑥ <u>제12조의7제1항 전단에</u>
원인사위원회가 제5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	

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 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 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 다.

- 1. ~ 4. (생략)
- ⑦ (생 략)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대경과기원의 교원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 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u>정</u> 관으로 정한다.

<신 설>

<u>.</u>
1. ~ 4.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의7(교원인사위원회) ①
이 경우 제12조의11에 따른 과
학영재학교에는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과학영
재학교 교원인사위원회"라 한
<u>다)를 둔다.</u>
②
<u>정</u>
관으로, 과학영재학교 교원인사
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11(과학영재학교의 설치
·운영) ① 대경과기원은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영

화하기 위하여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라 한다)를 둘수 있다.

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

- ② 제1항에 따라 대경과기원에 두는 과학영재학교는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로로 본다.
- ③ 과학영재학교의 학사·교원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 재교육 진흥법」을 따르고 「초·중등교육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 ④ 총장은 과학영재학교를 지 위·감독한다.

제12조의12(학력의 인정) 과학영 재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이 하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13(과학영재학교의 교직

<신 설>

<신 설>

원) ① 과학영재학교에 교원으로서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두고, 필요한 경우 강사를 둘 수있다.

- ② 과학영재학교의 교원의 보 수·수당·배치기준·계약기간 ·근무조건·교육 및 연수 등 에 관하여는 과학영재학교의 학칙으로 정한다.
- ③ 과학영재학교에는 교원 외 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 원 등을 둘 수 있다.
- ④ 총장은 제12조의7제1항 후 단에 따른 과학영재학교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영재학교 교원을 재임용할수 있다. 재임용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의6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2조의14(과학영재학교 교원의 파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에 대하여 그 임용권자는 영재교

<신 설>

육관련연구및능력개발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기간의제한을두지아니하고과학영재학교에파견할수있다.